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-118호

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15.

울산광역시 울주군수

1. 융자규모 : 100억원

※ 은행협조 융자 :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,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(3%)를 지원

- 2. 자금용도 :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- 3. 지원대상 :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
 - 도·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
 - 융자지원 제한 업종【붙임】

※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일 현재 시·구·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
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
-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
-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-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

4.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% 지원※ 단, 휴·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

5. 융자조건

○ 대출한도 : 6천만원 이내

○ 상환조건 :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

ㅇ 대출금리 :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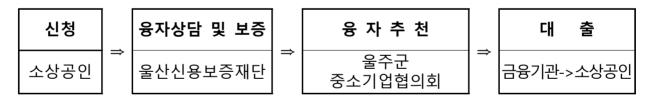
○ 대출은행 : 협약은행 7개

(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BNK부산은행)

6. 지워절차

신용보증서 발급 : 울산신용보증재단※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(융자금액의 0.9%)

ㅇ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: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



7. 신청서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5. 2. 6.(목) 09:00부터 (선착순 접수)

※ 보증상담 : 2025. 2. 10.(월) 09:00 이후

○ 신청방법 : 방문(20%), 온라인(80%)

- 방문 신청 : 울주군청 1층 문수홀

· 남울주 : 선착순 20명(온산, 온양, 청량, 서생)

· 서울주 : 선착순 50명(범서, 언양, 삼남, 웅촌, 두동, 두서, 상북, 삼동)

- 온라인 신청 :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ulsanshinbo.co.kr)

※ 방문 신청 시 07:00이후 청사 출입 가능

- 8. 구비서류 ※방문 신청 시 지참
 - (공통)신분증
 - (공통)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 - (법인)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
 - (공통)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

9. 상담 및 문의

-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(☎ 283-0101), 서울산지점(☎ 285-8100)
-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(☎277-8591~2)
-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(☎ 204-1384)

【붙임】

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	
56211	일반 유 흥주 점업	
56212	무도 유흥주점업	
68	부동산업. 다만, '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' 및 '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	
	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	
	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, 공간임대 외	
	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'는 제외	
91121	골프장 운영업	
91291	무도장 운영업	
91242	카지노 운영업	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	
46102 중	담배 중개업	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	
46333	담배 도매업	
64	금융업	
65	보험 및 연금업	
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		
	(66202)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	
	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	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	
	다단계판매업.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	
	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	
	업 종 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	
	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・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	
	업종	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 관련	●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 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 품 도소매업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 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•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(63992)	•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건전 문화 관련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	●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●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 업(96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• 기획부동산업주)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